

##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동향 소개

### Recent Policy Trends in Private Investment Project



최준

### 1. 서론

지난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당시 사회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시급한 공급필요성과 이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한 정부재정의 부족, 그리고 경영 효율성 등 민간기업의 장점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유인책, 그리고 민간투자자의 불확실성 및 저수익성 대상사업 선정 등으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이전인 제도 초기의 추진성과는 매우 부진하였다.

1997년 민자유치촉진법의 개정에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에 의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민간제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추가적으로 1998년 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 시 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격적으로 다수의 민간제안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2005년 사업방식에 정부고시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간에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의 절감 및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부재원 소요와 이로 인한 국민적 반감, 그리고 일부 수익성 낮은 사업시행에 따른 민간운영의 어려움 등이 표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도 사업선별을 위한 많은 자구적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민간투자사업은 2009년 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에 따른 투자 위험의 증가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급 요구 및 정부재원 부족이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잔존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2013년 민간투자사

최준 : 미래교통 교통계획부, (주)미래교통 전무이사, choijoon@korea.com, Phone: 02-566-1797, Fax: 02-566-2920

업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이전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 변화 내용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최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여부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알아보고 2013년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추진방향 및 개정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 II. 현행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및 사업의 지정

### 1.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수익형(BTO)민간투자사업, 임대형(BTL)민간투자사업 등이 주요 사업방식으로 명시되어 있고, 2012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RTO 사업방식 및 BTO+BTL 혼합형 방식이 정부고시사업 방식으로 새로이 추가되었다.

#### ①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② BTL(Build-Transfer-Lease)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③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

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④ BOO(Build-Own-Operate)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⑤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 ⑥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⑦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⑧ ROO(Rehabilitate-Own-Operate)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 ⑨ RTL(Rehabilitate-Transfer-Lease)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추가적으로 법적 적합성,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 기타 고려사항이 충족된 사업

- ⑩ 주무관청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1호(BTO)와 제2호(BTL)를 혼합한 방식(혼합형)을 포함

### Ⅲ. 2013년 민간투자사업 정책추진 방향 및 변경내용 검토

## 2.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제1호 수익자부담능력원칙, 제2호 수익성원칙, 제3호 사업편익의 원칙, 제4호 효율성 원칙)에 근거하여 지정하되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3년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대상확대 등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간 경제성분석 결과에 의해 1단계 적격성 부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정책분석 등을 종합한 AHP분석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정책적 분석 등 종합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그 방식을 같이 할 전망이다. 또한 민자사업의 내실화 측면에서 민자철도사업의 경우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구분하여 요금수준의 상한을 '예시'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간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민자철도 요금체계 간 주무관청과 사업자의 입장차이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전망이다. 기타 MRG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민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재구조화 추진, 부대사업 활성화 및 수요확대방안 강구 등을 권유하고 있으며, 정책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보육·노인복지·복합화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대상의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 ①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 민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을 충족하고 중장기 혹은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의 추진 여부 선정

201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②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 민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을 충족하고 중장기 혹은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사업

## 1. 정책 추진방향

### ③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 민자사업의 일반원칙 중 제3호 사업편익의 원칙 및 제4호 효율성 원칙을 충족하고, 정부고시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 1) (제도 정비) 민자사업의 활성화·내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 보완

#### <민자사업 활성화>

- AHP분석 적용 확대 : 현재 정부고시 사업

의 타당성 판단에만 적용하고 있는 AHP분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경제성(B/C)·정책적 분석 등을 시행후 이를 종합평가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법
- 2012년 이전에는 재정사업(예타)에만 AHP 분석 실시, 민자사업(예타, 적격성조사)은 AHP분석 미수행, 이를 2012년에 정부고시 사업에 확대 적용
- 조기준공 인센티브 연장 : 조기 준공될 경우 동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인센티브를 연장
- 사업시행자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운용수입을 징수 가능
- 2009~2012년 착공사업에 적용 → 2009~2014년 착공사업에 적용

<민자사업 내실화>

- 총사업비 관리강화 : 민자사업 착공 후 주무관청 요구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및 재정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개선절차 개선 및 절차 위반에 대한 재제조치 마련
- 민투심 면제사업에 대한 기재부 통지절차 마련, 총사업비 증액내용 검증 강화 등
- 민자철도 요금상한 : 타 대중교통 수단과 대비하여 형평성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민자철도의 요금 상한 제시기준 마련
- 도시철도(경전철) :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1.8배 이하
- 광역철도 :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2.0배 이하

2) (재정부담 완화) MRG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 다각도의 재정부담 완화 추진

- 사업의 재구조화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의 위험분담 및 수익구조 등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재협상 추진

- 부대사업 활성화 :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발굴하여 그 수익을 재정부담 완화에 활용
- 수요확대방안의 강구 : IC 추가개설, 운행속도 향상 등 사용자 편의 개선을 통해 수요확대 유도

3) (민자사업 대상확대) 복지 등 정책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추진

- 보육시설 :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노인복지시설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검토
- 복합화 시설 :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과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시설복합화 적극 추진

4) (기타)

- 집행관리 : 2013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의 적기 추진 지원
- BTL 성과관리 : 서비스수준 제고 등을 위해 성과관리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정 적용을 위한 법령 정비, 민자 국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국제협력을 강화

2. 신·구조문 주요 변경 내용

앞서 언급한 2013년 민간투자사업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된 주요 조문을 도로 및 철도 등 SOC사업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사용료 상한기준(안) 또한 기본계획에서 '예시'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신규조문 대비표(도로, 철도 등 SOC사업 관련)

기존 조문	변경 조문
<p>사용료 상한 제시기준(도로)</p> <p>①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수요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요위험의 분담결과가 자금제조달의 효과 등을 고려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완화효과와 비교하여 정부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33조의 2(최소운영수입보장 완화)</p> <p>①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이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당사업의 위험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p> <p>&lt;생략&gt;</p> <p>&lt;생략&gt;</p>
<p>제65조(타당성분석)</p> <p>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p> <p>1. 타당성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p>	<p>제65조(타당성분석)</p> <p>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p> <p>1. 타당성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p>

표 2. 사용료 상한 제시기준(제69조제5항 관련)

현 행	변 경(안)
<p>사용료 상한 제시기준(도로)</p> <p><input type="checkbox"/> 건설보조금 100분의 30수준 전제로 통행료의 1.5~2배를 상한으로 함</p> <p><input type="checkbox"/>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p>	<p>사용료 상한 제시기준(예시)</p> <p>&lt;도로&gt;</p> <p><input type="checkbox"/> 건설보조금 100분의 30수준 전제로 재정사업 통행료의 2배 이하에서 제시</p> <p><input type="checkbox"/>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p> <p>&lt;철도&gt;</p> <p><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 건설보조금 100분의 50수준 전제로 서울시도시철도요금(1호선)의 1.8배 이하에서 제시</p> <p><input type="checkbox"/> (광역철도) 건설보조금 100분의 50수준 전제로 서울시도시철도요금(1호선)의 2.0배 이하에서 제시</p> <p><input type="checkbox"/> 높은 표정속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용 가능</p>

#### Ⅳ.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민간제한 허용여부 논의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무분별한 사업추진 및 정부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훼손의 우려로 해당 방식의 경우 민간제한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동안 민간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제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본 장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한 허용여부에 대한 공개토론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가 지역 공약 등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자우치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정부측의 제안으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그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여부 및 허용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내용에서는 최근 임대형 민자사업의 제안 허용여부 공개토론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및 효과, 그리고 추진 절차를 살펴보고, 그간의 민간제안제도의 공과 과, 그리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허용 혹은 불허에 대한 주요 논거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민간제안 허용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민간제안시 추진 절차(안), 지정기준 및 민간제안 허용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을 수록하였다.

## 1.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추진

###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배경 및 효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되 관리운영자인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시설에 대한 수요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BTO) 방식과는 달리 민간의 시설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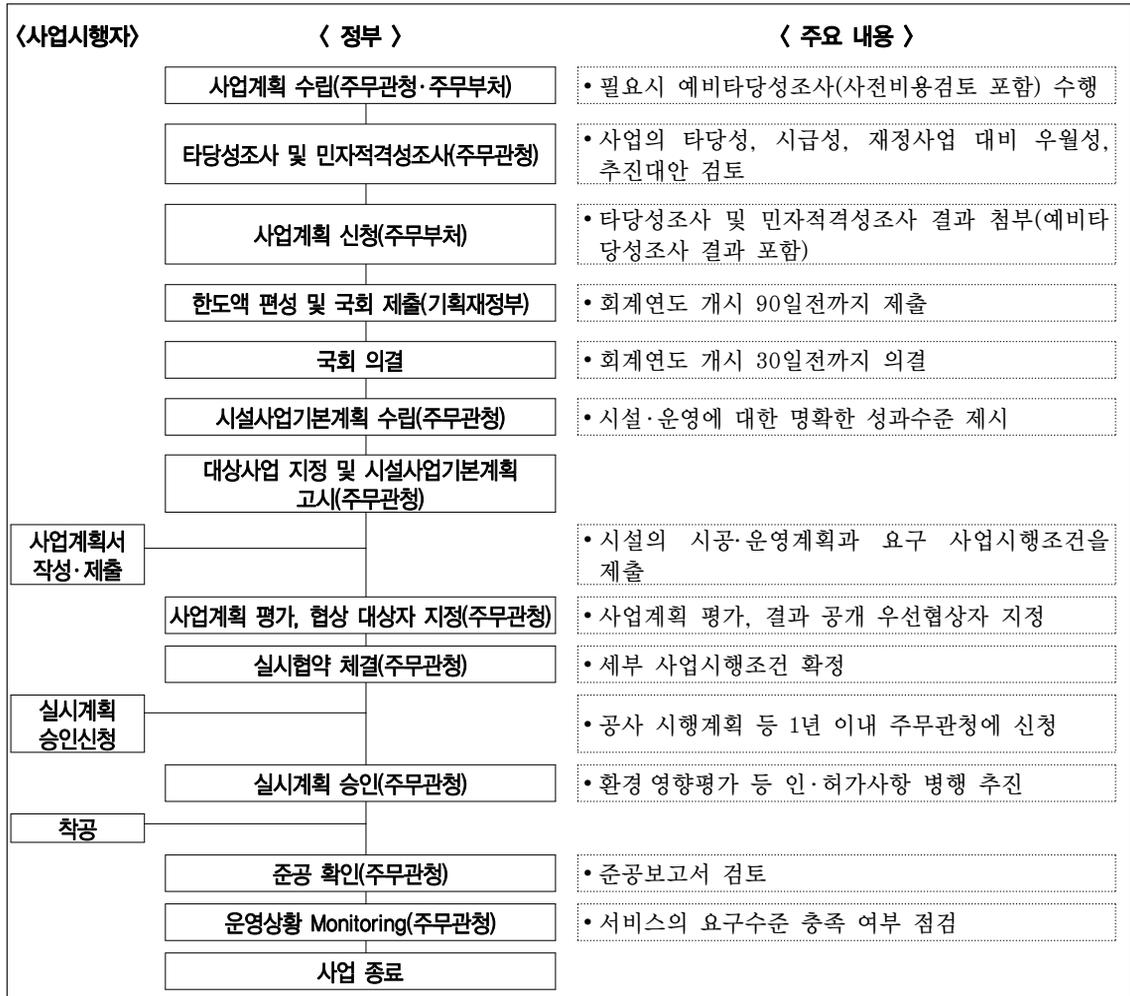


그림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말 기준 약 423건의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05~2011년까지 정부의 임대형(BTL) 사업고시 규모는 총 27조원, 그리고 2012년 정부지급금(국비, 지방비 모두 포함)은 약 1조 6,104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효과는 앞서 도입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임대형(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복지, 철도 등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도 민간투자가 촉진되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 전반의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 시작되며, 현행의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절차는 그림 1과 같다.

**2. 민간제안제도**

민간제안제도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설계, 건설 및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비해 창의성과 효율성을 더 잘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부문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7년 민자유치촉진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이후 1998년에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운영수입보장이 도입된 이후 본격적으로 민간제안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말 기준 수익형 민간제안사업은 총 105건에 총투자비 37.9조원 수준이며, 수익형 민간사업만을 놓고 볼 때 시행 건수로는 약 절반정도

에 해당하나 총 투자비 규모는 56%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민간제안사업은 정부입장에서 사업발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고시사업에 비해 신속하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도한 제안비용의 지출, 무분별한 사업제안의 남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3.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1) 민간제안 허용론의 논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론의 논거는 앞서 수익형 민간제안사업의 긍정적인 요소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며, 여기에 최근의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논거라 할 수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론의 논거로서,

첫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한다는 민간투자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논거로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분별한 제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추진여부 결정권한 및 판단능력이 충분하므로 민간제안을 통해 민간의 보다 창의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둘째, SOC의 지속적 확충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재정 한계라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의 SOC 투자규모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복지수요 등 지속적인 인프라 시설공급의 요구 등이 해당 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인프라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교육, 복지, 문화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확충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확충 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논거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성장률 둔화 등에 대비한 경기 활성화, 과도한 규제완화 등이 허용론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 2) 민간제안 신중론의 논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신중론의 논거 역시 앞서 수익형 민간제안사업의 부정적인 요소와 일맥상통한다. 민간제안 신중론의 논거로는,

첫째, 무분별한 민간제안 증가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제안비용, 평가부담의 증가 및 정부의 재정건전성 훼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민간의 고유한 속성상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의 극대화가 우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논거이다. 그러나 당해 논거의 경우 정부의 적절한 통제시스템으로 극복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주무관청의 사업발굴(정부고시사업) 노력의 감소가 우려된다는 논거이다. 이는 주무관청이 사업발굴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제안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수익

형 사업의 민간제안제도 도입 이후 정부고시사업이 축소된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민간의 사업제안 경쟁 촉진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주무관청 및 재정당국의 검토절차 강화에 따른 보상비용 저감, 그리고 주무관청의 신중한 결정 유도라는 긍정적 요소도 언급하고 있다.

## 4. 민간제안 허용 여부 검토 및 추진절차(안)

해당 자료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방안을 세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전면적 허용(안)으로서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재정관리능력이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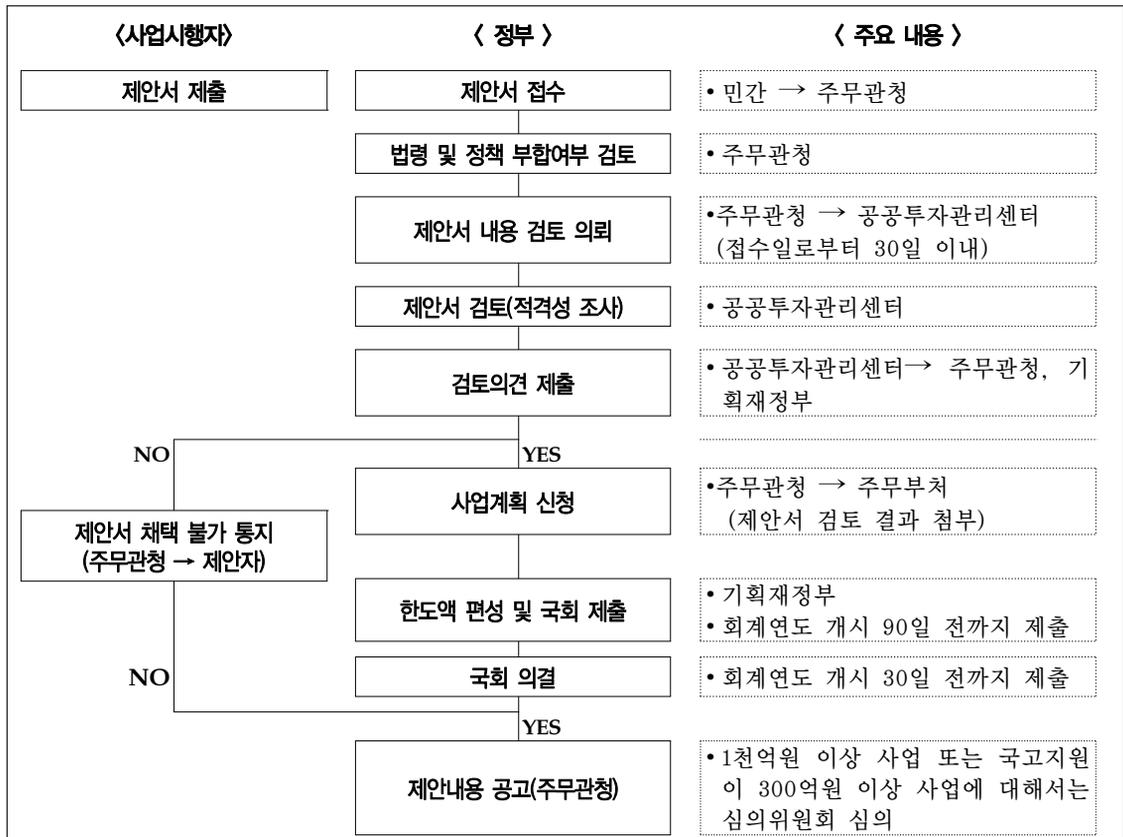


그림 2.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안)

는 논거에 기인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추진방법으로는 현행 고시사업절차와 유사하게 민간제안에 대한 적격성검토를 거쳐 장래 재정부담 능력과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제한적 허용(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제안가능 대상시설을 다시 획정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규율 방법으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제안가능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발휘 가능 여부, 민간운영 적합여부, 투자우선순위 및 공공부문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기준으로 허용 시설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점진적 허용(안)으로서 혼합형 사업(BTO+BTL),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민간제원을 우선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면 허용 시 제안남발에 따른 비효율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한도에 대한 우려를 그 논거로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 후 그 경과를 보아가며 제안제도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에서는 상기 대안에 대한 각각의 논거와 내재되어 있는 장단점, 그리고 우려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되 고시사업과 유사한 절차적 통제를 통해 재정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안)은 그림 2와 같으며, “제안서 접수 → 법령 및 정책부합 여부 검토(주무관청) →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 사업계획 신청(주무부처) → 한도액 편성 및 국회제출(기획재정부) → 국회의결 → 제3자 공고”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BTL 민간제안사업 지정기준 및 주요 고려 사항

BTL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타당성 검토에서는

민간제안이 허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상사업 지정과 관련, 일단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조항을 준용하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밖에 BTL 민간제안 허용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국회 관련 절차로서 현행 BTL 고시사업과 동일한 국회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사업제안 내용이 주무관청의 상위 정책 및 법률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AHP분석을 통한 종합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민간제안 허용 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6. 종합 판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전면적 민간제안 허용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거로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현 가능,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정부 관리능력의 증축,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상 효율상의 한계, 그리고 현 시점의 저성장 경제 여건 등을 언급하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생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혼합형”사업, 복합화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제안으로 인한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국회의결절차 등을 통한 제안 남발 억제, 그리고 중장기계획 수립시 BTL 사업에 관한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수립하여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V. 소결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 변화된 여건을 살펴보았다. 201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추진 방향의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최근 논의 중인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 허용여부 타당성 검토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면적인 제안 허용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건 변화는 SOC 등 인프라 공급 요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 재원의 한계

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린 문제에서 시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생성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과 재원활용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